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차단설비 설치 시 U-타입(상부 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 및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방재편 제4장 경보설비 중 4.9 터널진입차단설비의 4.9.3 설치지침 (1) 중 “터널”을 “터널(지하차도 제외)”로 하고, (9) 중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중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를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지하차도 및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중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U-타입(상부 개방 구간) 시점부 전방에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차도 특성, 주변여건 및 상부회차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4.9.3 설치지침에 (10)과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지하차도 침수시 차량이 우회하기 힘든 곳은 지하차도 상부 또는 입·출구부 전방(중앙분리대 개구부 등)에 회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11) 진입차단설비를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크린 하부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스크린이 바람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

제5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중 5.4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의 5.4.1 일반사항 및 5.4.2 설치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4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 5.4.1 일반사항

- (1)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 ①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② 안전손잡이는 하향으로 500kg/m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 5.4.2 설치지침

- (1) 지하차도(중단선형이 U자형 지하차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발생시 도로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3)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대피유도시설의 안전손잡이는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안전손잡이는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m 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안전손잡이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며, 박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손잡이 수평간격 25m 이내마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6)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행정사항 중 1.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종전 예규 시행일(2024.04.05.)의 개정에 따라 운영중인 지하철도에 대해서는 즉시 침수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철도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이 예규 개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운영 중인 지하철도에 대하여는 진입차단설비 및 대피유도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 제5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한한다)의 경우에는 U-타입(상부 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차도 특성, 주변여건 및 상부회차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10) 지하차도 침수시 차량이 우회하기 힘든 곳은 지하차도 상부 또는 입·출구부 전방(중앙분리대 개구부 등)에 회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11) 진입차단설비를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크린 하부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스크린이 바람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

## 제5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 5.4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 5.4.1 일반사항

(1)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

<신 설>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①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신 설>

② 안전손잡이는 하향으로 500kg/m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 5.4.2 설치지침

<신 설>

(1)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지하차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신 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신 설>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 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

(2)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3)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 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대피유도시설의 안전손잡이는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안전손잡이는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m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번째 안전손잡이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이내로 하며, 박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손잡이 수평간격 25m이내마

<신 설>

<신 설>

제3편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① ~ ③ (생략)
- ④ 이 예규 개정에 따라, -----  
-----.

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6)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중전 예규 시행일(2024.04.05.)의 개정에 따라, -----

<신 설>

- .
- ⑤ 이 예규 개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운영중인 지하철도에 대하여는 진입차단설비 및 대피 유도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